**한국잡지협회 공고 2020 - 6호**

## 2020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 연장 공고

(사)한국잡지협회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소재를 발굴, 취재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춘 잡지 콘텐츠 육성을 통한 잡지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잡지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『2020년도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사업』 - 기획취재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○ 지원대상 :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소재를 발굴, 기획하여 취재하고자 하는 잡지사

○ 지원사항
- 총 12종을 선정하여 기획취재지원(주제 제한 없음)
- 1종당 최대 500만원 지원(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용역비), 총 취재비의 20%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선집행해야 함)

○ 신청 기본자격
- 발행주기가 **월간 또는 격월간**이며, **창간 2년 이상(월간 : 통권 24호, 격월간 : 통권 12호) 발행**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
- 신청일 기준 최근 **1년 동안 월간 : 12회, 격월간 : 6회 발행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**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
-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'정기간행물법') 제19조(필요적 기재사항)를 이행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
- 발행인 및 편집인이 정기간행물법 제20조(결격사유 등)에 해당하지 않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

○ 평가기준 : 취재 목적(공익성), 취재 계획(시의성 및 독창성),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, 취재팀 구성/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
  ※ 지역문화 창출 활성화를 위해 잡지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(사업자등록증 기준), 지역(비수도권)콘텐츠를 전체 기획(안)의 60% 이상으로 취재하는 경우(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준) 가점 부여

○ 제외 대상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무가지 또는 해외 라이선스 잡지
- 정기간행물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(2019.1.1.부터 공고일까지)
-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간행물 또는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(2019.1.1.부터 공고일까지)
- 저작권/지적재산권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총 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한 경우
- 발행사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, 공단, 공기업 등인 경우
- 발행사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 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'정보공개 - 체불사업주 명단공개' 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(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)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은 제외
- 단순 보도나 소식 전달이 주 내용이거나,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
- 학회지, 기관지 등 기관·단체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

**• 전년도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**
**• 전년도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**
• 제출된 서류가 조작되거나 허위일 경우
• 기타 명백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
※ 선정 이후라도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(철회)할 수 있으며, 취소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

**○ 신청기간 : 2020. 2. 11(화) - 2. 17(월), 7일간,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**

○ 신청서류(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)
• 신청서, 확인서 각 1부,
• 잡지사업등록증(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)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)
• 사업계획서 6부(심사용)
※ 붙임3. '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'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해야 함.
• 2019년 6월 이후에 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 2호 각 2부(심사용)

○ 지원 절차

| |
|---|
| 사업공고 > 신청서 접수 > 예비심사(서류심사) > 본심사(외부 심사위원 심사) > 심사결과 발표 > 보조금 지급 > 기획취재(수시점검) > 집행마감 > 정산보고서 제출 > 정산완료 및 사업종료 |

○ 심사절차 : 1차 예비심사(서류심사) > 2차 본심사(외부심사위원 심사)

○ 결과발표 : 2020년 2월 중(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)

○ 유의사항
• 신청일 기준 취재가 이미 진행 중인 주제로는 신청할 수 없음
•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제, 내용, 범위 등은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변경 불가(일정, 취재 인원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)
• 기획취재물의 저작권은 잡지사와 (사)한국잡지협회가 공동 소유로 하며, (사)한국잡지협회는 이를 본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• 기사 게재 시 "후원 (사)한국잡지협회" / "본 기획 취재는 (사)한국잡지협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." / "본 기획 취재는 국내 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(사)한국잡지협회와 공동 진행되었습니다." 중 하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
• 신청서류 미제출,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선정 제외 대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
**• 본심사 시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심사 없음**
• 심사 결과 선정이 결정된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(1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국민연금/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)
**• 선정된 잡지사는 'e나라도움'을 통해 사업등록, 교부, 집행, 정산 등을 수행해야 함**
• 2020.11.30.까지 증빙등록 및 집행마감을 완료해야 하며, 2020.12.15.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• 기한 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지원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기획취재 중단, 반환 사유
• 명예훼손, 음란물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

• 기획취재 활동을 임의로 중단, 또는 폐지한 경우
•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‘e나라도움’으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등 기획취재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
•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• 사업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
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제출
• 제출처 : (07333)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, 잡지회관 4층 한국잡지협회 사무처
• 문의사항 : (사)한국잡지협회 사무처(박철호 과장, 02-360-0037)

붙임. 1. 신청서, 확인서 각 1부.
2. 사업계획서 서식 1부.
3.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1부. 끝.

※ 기타사항
- 공고문, 작성 예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납본 여부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www.nl.go.kr/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미납본된 건은 신청서류와 함께 발송하셔야 합니다.(제출 부수 외 별도, 미납본 호당 2부)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, 납세증명서는 온라인(국세 :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, 지방세 : 민원24 (https://www.minwon.go.kr/)) 또는 오프라인(국세 : 세무서, 지방세 : 구청/주민센터 등) 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발행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(공동대표일 경우 전원 제출),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번역지원, 기획취재 두 지원사업 모두 신청하시는 경우 공통 서류(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잡지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발행 잡지 2호 각 2부)는 추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